최신 시행 법령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7. 29.] [환경부령 제997호, 2022. 7. 29., 일부개정]

【주요내용】

(1)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정된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유해성, 용도 및 노출정보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 검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061호, 2021. 10. 14. 공포, 2022. 10. 15. 시행)됨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기준을 마련함**(제34조의2 신설).**

(2) 연간 제조·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을 할 때 해당 화학물질의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화학물질을 중간체**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함**(별표 1 제1호 비고 신설).**

*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화학물질

** 중간체: 다른 화학물질을 합성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질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8.] [법률 제18359호, 2021. 7. 27., 일부개정]

【주요내용】

(1)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하여, 실제 처분 사실 등의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제34조제2항 신설).**

(2)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원재료명 등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또는 위해발생 우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제4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3호 및 제7호의2 신설).**

최신 시행 법령

3. 식품위생법

[시행 2022. 7. 28.] [법률 제18363호, 2021. 7. 27., 일부개정]

【주요내용】

(1)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31조의3 신설).**

(2)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제56조제1항).**

(3)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하는 등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함 **(제101조).**

4.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8호, 2021. 7. 20., 제정]

【주요내용】

(1)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1조).**

(2)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 **(제7조).**

(3)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수산부산물 중간 처리업 등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제9조).**

(4)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해당 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16조).**

최신 시행 법령

5. 약사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07호, 2021. 7. 20., 일부개정]

【주요내용】

(1) 품목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에 작성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품목허가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을 최대 3개로 제한함 **(제31조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 제한기간을 5년으로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 제한기간을 3년으로 함 **(제31조제16항).**

(3)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 목적인 의약품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안전성·유효성 확증을 위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35조 및 제35조의4).**

(4) 원료의약품 수입의 경우에도 해외제조소를 등록하도록 함 **(제42조제7항).**

(5) 의약품공급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적용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함 **(제47조, 제47조의2, 제69조의4 및 제95조).**

(6) 장애인의 의약품·의약외품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약품 등 안전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제59조의2, 제65조의5 및 제65조의6 신설).**

(7)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에 국가출하승인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부과 사유로 추가하고, 과징금 상한을 해당 품목 판매금액의 2배로 개정함**(제81조의2).**

최신 시행 법령

6. 의료기기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9호, 2021. 7. 20., 일부개정]

【주요내용】

(1)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은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고시받은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함**(제6조의2).**

(2)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8조).**

(3) 인체 삽입 의료기기,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자에게 봉함 의무를 부과하고, 봉함한 의료기기는 개봉판매 할 수 없도록 함**(제18조의2 및 제25조의5).**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제36조 등).**

(5)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판매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

(6) 의료기기 부작용등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를 부과함 **(제43조의6).**

최신 시행 법령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2호, 2022. 1. 11., 일부개정]

【주요내용】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포함하도록 함 **(법률 제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5호·제16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2 신설).**

(2)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상 법에서 정한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제21조의2제1항 신설).**

(3)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도록 함 **(제21조의2제2항·제3항 및 제5항 신설).**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수익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고, 가입자는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함 **(제21조의3 신설).**

(5)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 등을 수행함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제29조의2 및 법률 제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2항제1호의4 신설).**

최신 시행 법령

8.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37호, 2022. 1. 11., 일부개정]

【주요내용】

(1)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14조의2 신설 및 제7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24조의2제5항 신설).**

최신 시행 법령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37호, 2022. 1. 11., 일부개정]

【주요내용】

(1)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다양화 **(제3조의2)**

가. 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및 낙찰결과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함 **(제3조의5 신설).**

(3)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함 **(제12조의3).**

(4)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함 **(제13조의3 신설).**

(5)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제도 개선 **(제16조의2)**

가. 목적물의 공급원가 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당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6)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 **(제24조의9부터 제24조의11까지 신설, 제36조)**

최신 시행 법령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10호, 2022. 1. 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도모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제38조).**

11. 비료관리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90호, 2022. 1. 4., 일부개정]

【주요내용】

(1) 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 또느 비료사용자는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을 하지 않은 비료 등을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 일시, 공급 또는 사용 물량,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 등을 신고하도록 함 **(제19조의2).**

(2) 비료생산업자 등이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도록 함 **(제20조).**

(3)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30조).**

최신 시행 법령

1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92호, 2022. 1. 4., 제정]

【주요내용】

(1) 이 법은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적용을 통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2) 산업 디지털 전환을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함 **(제2조).**

(3)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는 이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갖고,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수익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함 **(제9조).**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생성·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 등의 생성·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등에 대한 협력 권고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선도사업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과 기업 등의 신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반 기술·장비·소프트웨어 및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품·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제20조).**

최신 시행 법령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539호, 2022. 3. 15., 일부개정]

【주요내용】

택배 간선기사, 자동차・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물류센터・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식자재 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 **(제125조제5호의2, 제13호 및 제15호).**